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사업명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구 미 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2013년 경북지역 공약사업(IT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으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15.11.23)되어 구미시를 중심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기부, 산업부의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

나. 금오테크노밸리 內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가 2018년 4월 준공되었고, 웨어러블 분야 중소기업의 전문적 지원 마련 및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주관기관인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개요

- 1) 감면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2) 대 표 : 이 목
- 3)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 4) 사용(감면)기간 : '18. 7. 1. ~ '20. 12. 31. (30개월)
- 5) 사용(감면)면적 : 2,263㎡(1층 1,133㎡, 2층 1,130㎡)

1) 인체부착 및 착용형 스마트기기(소방방재용 스마트 헬멧, 생체정보 수집용 의료기기, 스마트 가전제품 등)

나. 주요사업

1)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개요

- 위 치 :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금오테크노밸리 내
- 규 모 : 연면적 4,167㎡, 지상 4층
- 사업기간 : '16. 10. 1 ~ '20. 12. 31 (51개월)
- 사 업 비 : 168.2억(국 75, 도 32.8, 시 60.2, 민자 0.2)
(※ 센터건립 46, 장비구축 100, 운영 22.2)

2) 추진현황

- 2013. 3. :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IT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으로 추진
- 2015.11.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2016.10. : 과기부·경북도·구미시 업무협약 및 사업추진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센터 구축 주관기관 선정
- 2017. 8. ~ 2018. 4. : 상용화지원센터 착공 및 준공

다. 감면 필요성

- 1)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장비 활용성 제고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기반 마련의 거점 역할 기대
- 2) 주관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구미시의 출연기관으로 관련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며,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미시의 지원이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This aerial photograph shows the Gyeongju National University campus. Key buildings and areas are labeled in Korean:

- Top Left:** 구미시민교 (Gumi City People's Church), 신동원은행 (Shindongwon Bank), 서문앞터 (Seomunap-teo).
- Top Center:** 시민운동기 (Citizen Sports Ground), 동아인쇄복사 (Dongna Inseoboksa), CU.
- Top Right:** 도시통합 관제센터 (City Integration Control Center), 기업연구관 (Corporate Research Center), 금오공대 교육관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Center).
- Center:** 게스트하우스 (Guest House), 금오공대식당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ining Hall), 금오공대 기숙사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ormitory), 금오 테크노밸리 (Gyeongsang Techno Valley).
- Bottom Left:** DGB대구은행 (DGB Daegu Bank), 구미 종합 비즈니스 센터 (Gumi Comprehensive Business Center), 전자파차폐동 (Electromagnetic Shielding Building), IT의료융합기술센터 (본관동) (IT Medical Convergence Technology Center (Main Building)), 3D디스플레이 부품소재실용화지원센터 (3D Display Component Material Commercialization Support Center).
- Bottom Center:** IT의료융합기술센터 (지원및연구동) (IT Medical Convergence Technology Center (Support and Research Building)), 모바일융합 기술센터 (Mobile Convergence Technology Center),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3D Printing Manufacturing Innovation Support Center).
- Bottom Right:** 구미교육관 (Gumi Education Center), 경운대학교육관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Center),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금오공대 고등교육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igher Education Center).

 A red rectangle highlights a building in the center-right area, and blue markers A, B, C, and D are placed at various locations: A is near the DGB bank, B is near the Seomunap-teo, C is near the 3D Display Center, and D is near the 3D Printing Center.

A large, modern, multi-story building with a light-colored facade and many windows. The building is surrounded by greenery and a paved area where people are walking and sitting. The sky is blue with white clouds. The building has a sign that reads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Wearable Smart Device Commercialization Support Center).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소관 실·과		투자통상과
입 안 자	과 장	최 동 문
	담 당	권 기 열
	담 당 자	김 익 기 (480-6142)